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 2).

마.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기관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기간 : 2020. 5. 4. ~ 2020. 6. 11.

3) 행정규제 :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기준)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직원 정원이 10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또한,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 지정기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3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2.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기관
3.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그밖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4. 공공기관의 자회사

5.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 국제규범 적용 등으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

6.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민영화 예정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법 제4조에 의한 요건 변동이 예상되는 기관

7. 민간기업과의 경합으로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관

제1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만료, 그”를 “만료 2개월 전(그”로, “지체없이”를 “1개월 이내)에”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에게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복수(複數)에 미달하여 후보자를 다시 모집해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연구기관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및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중인 사업

3.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u> <u>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u> <u>“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u> <u>100분의 85를 말한다.</u> <u><신 설></u>	<u><삭 제></u> <u>제7조(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기</u> <u>준)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u> <u>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직원 정</u> <u>원이 10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u> <u>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u> <u>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u> <u>의1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u> <u>지정한다. 또한, 법 제5조제4항</u> <u>에 따라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u> <u>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u> <u>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이상</u> <u>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u> <u>지정한다.</u> <u>제7조의2(기타공공기관 지정기준)</u> <u>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u> <u>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u> <u>호를 말한다.</u> <u>1. 영 제7조의3의 연구개발을</u> <u>목적으로 하는 기관</u> <u>2.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u>
<u><신 설></u>	

기관

3.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국립
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
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
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
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그밖
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기관

4. 공공기관의 자회사

5.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
정 업무, 국제규범 적용 등으
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공정
성이 요구되는 기관

6.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민
영화 예정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법 제4조에 의한 요건 변
동이 예상되는 기관

7. 민간기업과의 경합으로 자율
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기
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관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만료 2개

월 전(그 -----

--- 1개월 이내)에 -----

-- 임원추천위원회-----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에게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복수(複數)에 미달하여 후보자를 다시 모집해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연구기관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임명예정 공공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및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을 말한

<신 설>

다.

제25조의4(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

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
액의 합계액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
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
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
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

3.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

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
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
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
사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
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
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
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
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
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
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큰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긴
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
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
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
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15 - 5511